

학생자치단체

- 총학생회
- 숙명리더십그룹
- 동아리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전체 재학생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각종 학예술행동, 봉사활동 등 운영규정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총학생회 구성은 총학생회장 밑에 집행부를 두고 있다. 또한 학생활동의 신장을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2021.12.03 일부개정

전문

숙명여자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여성사학으로 여성 교육의 역사와 미래를 담지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러한 역사에 발맞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진리 탐구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학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가부장제 타파와 여성해방을 위해 전진할 것이다. 본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회의 부조리함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본회 회원의 제반 권리를 옹호 및 증진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본회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회칙은 1985년 11월 15일에 제정되고, 2021년 12월 03일 1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 ①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학생들 간의 단결을 통하여 대학 자치의 완전한 실현과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본회는 여성혐오를 비롯한 소수자 혐오에 저항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이해 대변과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 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 편입학과 동시에 정회원으로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휴학, 정학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준회원으로 간주된다.
- ④ 본회의 회원은 수료, 졸업, 자퇴, 퇴학 등으로 학사 과정 소속에서 벗어나는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이 보장된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 ⑥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당한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 ⑧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자치 활동과 관련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 ⑨ 본회의 회원은 성별, 성적지향, 민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연령, 재산규모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⑩ 준회원은 제3항과 제4항의 일부가 제한된다.

제5조(회원의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본회의 회원은 성별, 성적 지향, 민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연령, 재산규모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당한 자치활동을 침해받거나 본회를 부인당했을 때 저항할 의무가 있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 ⑥ 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의 소속기구에서 주최하는 활동의 혜택 중 일부를 제한받을 수 있다.

제6조(기구)

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 1. 의결기구: 전체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총학생회인수위원회
- 3. 산하기구: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재정감사위원회
- 4. 특별기구

제7조(의결)

-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전체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와 학내의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 총학생회장의 비상직권은 '의사결정권'으로 정의하여 위의 1항에서 언급한 타 의사결정권들과 효력이 같다. 그러나 비상직권 사용 시 동일 사안에 대해 총회 혹은 총투표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의결 기구의 결정을 따른다.
- ③ 2항에 따른 비상직권은 사용 이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및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장은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한다. 비상직권 사용에 관한 한 예외적으로 임기 만료 이후에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처분에 응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8조(대표자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본회의 대표자로서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과 부회장
 - 3.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과 부회장
 - 4.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각 분과장
- ②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전체학생총회

제11조(지위와 구성)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의장)

- ① 전체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공고, 회의 주재 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모두 사고 시 중앙운영위원회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 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제13조(소집)

- ①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
 2. 정회원 1/1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②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체학생총회 개최일을 결정한다.
- ③ 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은 소집 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의 의결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공고)

- ①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소집을 개최 일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제13조 제3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전과 안전에 대한 설명

제15조(개회 및 의결)

전체학생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전이 상정된 전체학생총회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안전)

-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 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전
 2. 정회원 1/1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전
 3. 제47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제17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각 안전에 대하여 거수한 회원의 명단은 기록하지 아니하며, 그 총수만을 기록한다.

제2절 학생총투표

제18조(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19조(투표권)

정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이 있다.

제20조(시행 공고)

- ① 학생총투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전학대회 대의원의 1/2의 의결, 정회원 1/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시행 공고한다.
- ② 의장은 총투표 시행 일주일 전까지 총투표 시행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③ 시행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 일시
 2. 투표 방식
 3. 투표소 설치 장소
 4. 안전과 안전에 대한 설명

제21조(성립 및 의결)

학생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투표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투표관리위원회)

-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모두 사고 시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 ② 총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중앙집행국은 학생총투표 시행 준비를 보조한다.

제23조(투표 기간)

- ① 투표 기간은 3일로 한다.
- ② 투표 종결 시점에서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았을 시, 투표율이 40% 초과 50% 미만일 경우 1일 간의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투표 방법)

- ① 투표는 기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25조(결과 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총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26조(무효 처리)

명부상 총 투표자 수와 총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학생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3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27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전체학생총회 다음으로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8조(구성)

- ① 전학대회는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소속 기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제3호는 예외로 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단과대학·독립학부 정·부학생회장, 학부·학과·전공 정·부학생회장
 3.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 ② 학생대표자가 부재 시 해당단위 회칙에 의거한 임시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29조(의장)

- 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하며 전학대회의 소집 및 회의 주재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 ②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모두 사고일 때 혹은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③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④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불참, 지각, 중도이탈 등을 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된 사유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매년 첫 전학대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31조(소집·공고)

-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전학대회 재적 대표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전학대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소집 공고한다. 단, 긴급 시에는 예외를 둔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 대의원 명단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 ⑤ 전학대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한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 ①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회칙, 각종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
 2. 본회의 학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 개진
 3. 본회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계획 논의 및 의결
 4. 본회 예산, 결산 및 회비의 인상, 인하에 대한 논의 및 의결
 5. 본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6. 본회 총·부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
 7.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및 총투표 실시에 관한 논의 및 의결
 8.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9.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②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 제출할 수 있다.
- ③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개·폐회 및 의결)

- ①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회의 진행 중 성원 미달 시 폐회한다.
- ② 전학대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단 탄핵 발의안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 개정 발의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대리 참석자는 참석 및 출석 성원에 포함하지 않으며 의결권이 없다. 단, 학생 대표자 궐위로 인한 임시 대표자는 참석 및 출석 성원에 포함하며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4절 중앙운영위원회

제34조(지위)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기구이자, 운영기구로서 전체학생총회, 전학

대회 다음으로 최고 기구이다.

제35조(구성)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3. 동아리연합회장

② 학생 대표자 권위 시 해당 단위의 회칙에 의거하여 임시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이 인정되고 의결권을 부여한다.

제36조(의장)

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주재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②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모두 사고일 때 혹은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되는 한 명이 직을 대신한다.

제37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①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본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이 불참, 지각, 중도이탈 등을 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된 사유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38조(업무 및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전학대회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회비의 심의 조절
2. 본회 제반 사업 계획안의 심의 조정
3. 본회 예결산 심의
4. 총학생회 회칙 및 세칙 제개정
5. 본회의 회원 및 운영에 대한 중대한 문제 심의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제39조(소집)

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의 요구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40조(안건 발의)

① 중앙운영위원은 모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부재 시 안건 발의는 없던 것으로 한다.

② 모든 안건 발의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회의 성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회순통과 이전에 상정할 수 있다.

제41조(표결 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제의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구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개회, 폐회, 의결)

①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대표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회의 진행 중 성원 미달 시 폐회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출석 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대리 참석자는 참석 및 출석 성원에 포함하지 않으며 의결권이 없다. 단, 학생 대표자 권위로 인한 임시 대표자는 참석 및 출석 성원에 포함하며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단

제43조(임기)

- ①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학기의 종강 직후부터 익년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 시에는 당선 직후부터 해당 년도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시 다음해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학생회장단의 임무를 대행한다. 단, 첫 소집은 전년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한다.
- ③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상세한 운영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선출)

- ①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입후보는 본회의 회원 중에서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 등록한 자여야 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 5학기 이상 7학기 이하 등록한 자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선일 경우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과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5조(총학생회장)

-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민주적으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국 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및 전체학생총회의 의장이 되어 각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④ 중앙집행국 각 국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⑤ 전학대회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⑥ 총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심의·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⑦ 학생자치활동 및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하여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⑧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6조(부총학생회장)

- ①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전조 제⑥항과 제⑦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기타 부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7조(탄핵)

- ① 전학대회 또는 본회 회원은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③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발의는 전학대회 재적 대표자 2분의 1 이상 또는 본회의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 ④ 탄핵안은 전학대회 재적 대표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학생총회·학생총투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전체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의 과반 투표 및 투표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절 중앙집행국

제49조(지위)

중앙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50조(구성)

- ① 중앙집행국은 총학생회 인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하며 전학대회의 사후 인준을 거친다. 단, 총학생회 인수위원회가 해소된 이후에는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하며 전학대회의 사후인준을 거친다.
- ② 중앙집행국은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중앙집행국장, 각 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 국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서 국 내에 팀을 구성하여 팀장, 팀원을 두는 등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다.
- ③ 중앙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선임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인준하며, 전학대회의 사후 인준을 거친다.
- ④ 중앙집행국장은 1인으로 제한하며, 필요에 따라 부국장을 둘 수 있다.

제51조(업무 및 권한)

- ① 중앙집행국은 총학생회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의 최고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 및 예산의 집행
 - 2. 본회의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 3. 기타 집행국의 업무
- ② 중앙집행국은 전학대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중앙집행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과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 및 각종 안건의 발제, 질의응답에 응대 등의 주요정보전달
 - 2. 중앙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중앙집행국 내 공유
- ④ 중앙집행국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회의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3절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제52조(구성 및 해소)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당선 이후 5일 이내에 구성을 완료해야 하며, 신임 총·부총학생회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해소된다.

제53조(업무)

- ①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 1. 총학생회 중앙집행국 인선에 관한 일정 및 관계 업무
 - 2. 총학생회 중앙집행국이 구성될 때까지의 제반 학생회 사업
 - 3. 전대 총학생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의 업무 인수

제54조(인선)

- ①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중앙집행국 구성 전까지 원활한 업무 인수 및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선규정을 둔다.
 - 1. 인수위원장은 신임 총학생회장이 한다.
 - 2. 전대 총학생회장단은 신임 총학생회 인수위원으로 유임해야 한다.
 - 3. 전대 총학생회장단은 국장급 중앙집행국원 2인 이상을 신임 총학생회 인수위원으로 유임시켜야 한다.
 - 4.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최소 2인 이상의 인수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 ② 신임 총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그 인선을 보고해야만 한다.

제4장 산하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제55조(지위)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독립학부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56조(구성)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전체 학생으로 구성한다. 회원 규정은 본 회칙에 준한다.

제57조(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 독립학부를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은 해당 단과대학 독립학부 학생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③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미선출시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 또는 전년도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집행부에서 임시 대표를 선출한다.

제58조(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본회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단,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 본회의 공적 위치를 가지고 참여할 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59조(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본회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갖는다.

제2절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제60조(구성)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소속 재학생 전원으로 구성하며 그 활동을 위해 자율적인 조직을 갖는다.

제61조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과 부학생회장은 당해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를 대표하여 소속 단과대학 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해당 학부 학과 전공 학생회 소속 재학생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③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 미선출시 전년도 학생회 집행부에서 임시 대표를 선출한다.

제62조(업무 및 권한)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당해 학과의 고유 업무 및 학생회장과 회원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단,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 본회의 공적 위치를 가지고 참여할 시, 학부·학과·전공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63조(재정)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64조(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본회칙과 단과대학 회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갖는다.

제3절 동아리연합회

제65조(구성)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아리와 그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66조(동아리연합회장단)

- ① 동아리 연합회의 회장단은 선거권을 가진 동아리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② 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중앙운영위원 및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③ 동아리연합회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 본회의 공적 위치를 가지고 참여할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논의 및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67조(활동)

- ① 동아리연합회는 본회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갖는다.
-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4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68조(목적)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독립성을 가지며, 학생이 주체가 되어 소수자성을 지니는 개인 혹은 집단에 게 가해지는 차별 및 억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모든 구성원의 권익 수호를 위해 행동 및 연대하여 학내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9조(구성)

- ① 학소위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운영위원은 공개모집이나 추천 등을 통해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 ③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 가운데 후보자를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70조(주요 업무)

학소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 소수자 인권 사안에 관한 학내 의견수렴
학내외 학생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
인권의식 고취 사업
학내 인권침해 사례 아카이빙
기타 학소위의 업무

제5절 재정감사위원회

제71조(목적)

재정감사위원회는 숙명여자대학교 내의 학생자치기구의 재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구성)

- ① 재정감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재정감사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 ② 재정감사위원은 정규모집을 통해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재정감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 ③ 재정감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총학생회 중앙집행국 1인을 간사로 둔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원 가운데 후보자를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73조(주요 업무)

재정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기감사
특별감사
감사교육
재정감사결과 보존·관리
기타 재정감사위원회 업무

제5장 특별기구

제74조(지위)

- ①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기구이다.
- ②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는다.

제75조(성립 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2. 분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필요한 분야에 관련된 단체

제76조(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 요청이 있으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단체가 제7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5. 자치규칙
6. 예산안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의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자치규칙에는 성립 목적,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7조(전학대회의 인준)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인준안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협의)

- ①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국과 협의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의 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기구는 필요한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79조(자치규칙)

- ①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 ②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선거

제80조(선거권)

본 회의 모든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81조(피선거권)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4, 5, 6학기를 등록 중인 자 (다음 해 재선거는 5, 6, 7학기를 등록 중인 자)
2. 본 회원 1/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법령 및 학칙에 의거 징계사항이 없는 자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3학기 이상 6학기 이하를 등록 중인 자 (다음 해 재선거는 3학기 이상 7학기 이하를 등록 중인 자) 단, 약학대

학의 경우 10학기 이하를 등록 중인자로 한다.

2.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1/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법령 및 학칙에 의거 징계사항이 없는 자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7학기 이내 등록 중인 자. 단, 약학대학의 경우 11학기 이내 등록 중인자로 한다.
2. 소속 학부·학과·전공 1/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법령 및 학칙에 의거 징계사항이 없는 자

제82조(선거방법)

- ① 본 회의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한다.
- ② 선거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재난 등으로 인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학기의 수업이 전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는 경우 전면 온라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83조(선거 시기)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및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의 선거는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 및 각 단위 학생회장단의 임기 만료 14일 전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의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봉사단 또는 집행국을 둘 수 있다.

제85조(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잔여임기 180일 이상일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당해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기타 학생문화활동 단체의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후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학생회장단 중 1인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86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87조(원칙)

본회의 모든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88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89조(회비)

- ① 본회의 회비는 중앙집행국에서 확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전학대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한다.
- ② 본회의 회비는 매학기 등록 시 납부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학생회의 사업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90조(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전년도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당해연도 1학기 종강일까지
 2. 2분기: 당해연도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91조(예산안·결산)

- ① 학생회비를 걷어 사용하는 모든 학생자치기구는 해당 기구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③ 그 외에 예산안·결산 심의의 원칙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제92조(예산안 심의 및 인준)

- ① 본회의 예산안은 중앙집행국에서 편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끝난 예산안은 해당 분기 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본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개월간의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④ 가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1주일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 ⑤ 예산 확정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에 가감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집행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단, 사안이 시급하거나 그 금액이 경미한 경우 총학생회장 판단 하에 집행 이후 결산 내역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장 회칙 개정

제93조(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학대회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회의 2/3 동의와 함께 총학생회장이 발의
3. 회원 500인의 연서와 함께 발의

제94조(의결)

회칙 개정 발의 시 전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열어 전학대회 재적 대표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5조(개정안 정리)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는 후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96조(공포)

- ① 의결된 회칙은 지체 없이 전학대회 의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10일 이상 게시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 개정 찬성 대의원 명단
 5.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최종 회칙

제9장 세칙 제·개정·폐지

제97조(발의)

세칙 제·개정·폐지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학대회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회의 2/3 동의와 함께 총학생회장이 발의

3. 회원 300인의 연서와 함께 발의

제98조(세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② 세칙 제·개정·폐지 발의안은 제32조에 따라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③ 세칙 제·개정안의 정리에 관하여는 제93조(개정안 정리)를 준용한다.
- ④ 세칙 제·개정·폐지의 공포는 제94조(공포)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관례)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유권해석) 본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 회칙은 198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85년 선출되는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대의원 및 대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1985년 월 일부터 1987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0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1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숙명리더십그룹

숙명리더십그룹은 본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봉사심과 이타심을 배양하며 숙명의 이름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리더십그룹 활동은 재학 중 자기계발과 커리어 관리에 특별한 기회가 되며, 진로 선택과 희망 직종 진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	그룹명	활동 내용
1	플라리스	숙명여대 입학 홍보 및 상담
2	숙명옴부즈맨 BLOOM	숙명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
3	숙명니비스응원단	교내외 응원공연 봉사, 응원제 개최
4	숙명장학생봉사단	장학기금 마련 & 홍보, 외부봉사
5	숙명 SIWA 해외봉사단	한인입양아캠프 등 해외 봉사 개최
6	숙명 SFV 해외봉사단	NGO 연계 해외봉사 활동
7	숙명의료봉사단	연계병원 내 환자 안내 / 보조
8	숙명지식봉사단	소외계층 교육 봉사
9	숙명통역봉사단	교내외 통역 봉사
10	SEM	에너지 절약, 클린 캠퍼스 홍보
11	숙명스포츠봉사단	스포츠 봉사를 통한 불우이웃 재활 의지 향상
12	URINK	교내 외국인 학생 지원
13	스타티스	등문 인적자료 확인, 발전기금모금 행사 지원
14	숙명엠베서더	숙명여대 홍보대사, 의전활동 및 기수단, 캠퍼스투어 진행
15	숙명통신원	공식 홈페이지 SM뉴스 & SNS 인터뷰 기사 작성
16	IT's U	숙명 IT 서비스 모니터링&제안, 이용 홍보
17	스마티어	도서관 이용자 대상 봉사, 어린이 책읽기 교외봉사
18	숙명문화봉사단	박물관 전시 안내 & 지원
19	숙명한국어교육봉사단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20	비트윈	취업프로그램 지원, 뉴스레터 제작
21	청	숙명 토론문화 정착 지원 / 토론대회 보조
22	숙대신보	주간 학보 제작, 여고문학상 개최
23	숙명타임즈	월간 영자학보 제작
24	교육방송국 SBS	교내 방송제작, 주요 행사 생중계
25	SM-net	인터넷 방송국 운영, 주요 행사 생중계
26	FROM	생활과학대학 행사지원 및 대외봉사
27	Future CEOs of Korea	경상대학 행사지원 및 대외봉사
28	나르샤	음악대학 행사지원 및 대외봉사
29	리코리스 엔젤	약학대학 행사지원 및 대외봉사
30	숙명아트엠베서더(SAA)	미술대학 행사지원 및 대외봉사

중앙동아리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이하 '동아리')는 본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학생문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동아리는 2개 이상 단과대학, 4개 이상 전공으로 구성된 15명 이상의 재학생과 지도교수 1명으로 구성됩니다.

No	동아리명	활동내용	No	동아리명	활동내용
1	BSL	힙합	27	설화연	태권도
2	속풍	풍물	28	검도부	검도
3	설현애	기타	29	숙명스키팀	스키
4	설렘	뮤지컬	30	아브락사스	볼링
5	반국회	연극	31	SC숙명	수영
6	DESTINY	락밴드	32	FC숙명	축구
7	맥스	댄스	33	스노홀릭	보드
8	소피아	오케스트라	34	배속켓볼	농구
9	코드 BLUE	어쿠스틱 기타	35	SM-PAIR	국제학생회의
10	숙명합창단	합창	36	SMDC	토론
11	PTPI	봉사	37	한국상경학회	경영학
12	호우회	봉사	38	하늘섬	천체관측
13	아름터	교육봉사	39	자연과학연구회	자연과학
14	숙명로타랙트	봉사	40	AISEC	국제인턴십
15	숙명앤네스티	인권	41	송우	역사탐방
16	UNSA	유엔한국학생협회	42	금융경제연구회	금융경제
17	봉즐	봉사	43	SOLUX	리눅스
18	STEP-UP	교육봉사	44	형설지공	독서토론
19	가치	인권	45	SFA	여성학
20	이루다안	장애인권	46	한국유네스코학생회	국제교육과학문화
21	JOY	기독교	47	숙미회	사진
22	IVF	기독교	48	묵아랑	서예
23	CCC	기독교	49	클패시월	문학
24	원속회	원불교	50	ESCA	만화
25	속불회	불교	51	설미	미술
26	글라라	천주교			